

#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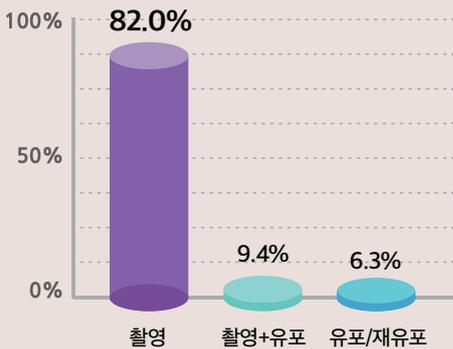
수행과제명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2 / E-mail: dkyoon@kwidimail.re.kr)

## 디지털 성폭력범죄 관련 검찰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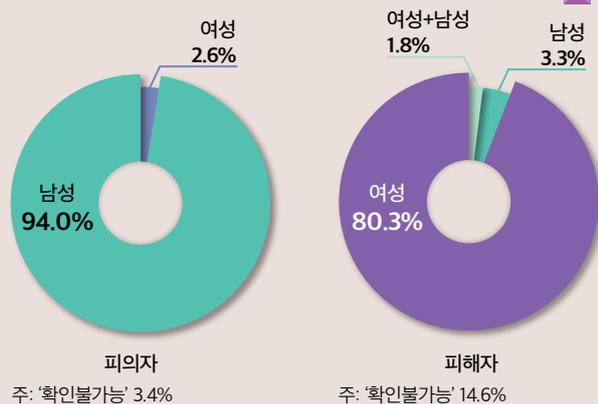
### 초록

-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재유포가 끝없이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영상물이 어디에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완전 삭제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특히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한 악질적인 범죄로 성착취영상물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송, 유포행위, 강요, 협박, 강제추행, 강간, 아동학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착취영상물제작,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중한 다양한 행위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에 관한 검찰통계를 활용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죄특성을 파악하고, 검찰처분 및 1심 재판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불법촬영 사건처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유형



### 피의자·피해자 성별분포



### 정책 제언

- 검찰처분 중 낮은 기소율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법원 선고 강화
-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의자 저연령화에 대한 대책 수립
- 젠더폭력적 속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 1. 배경 및 문제점

- ④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재유포가 끝없이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영상물이 어디에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완전 삭제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④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통계분석을 통해 동 범죄의 주요 범죄유형인 촬영, 유포/재유포, 촬영+유포범죄에 대한 범행장소, 범행 대상, 범행도구, 피해부위, 피해자 식별 여부, 촬영횟수, 유포횟수별 특성을 알아보고 검찰처분,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통해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송치 등 범죄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함.
- ④ 이를 통해 검찰 사건처리 및 1심 판결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2. 분석결과

<표 1> 분석개요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접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사건 피의자 4,948명(대검찰청 제공)에 대해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에서 제공하는 불기소결정서 및 1심 판결문</li> <li>-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a href="http://www.kics.go.kr">www.kics.go.kr</a></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조사, 데이터 코딩 및 통계분석</li> </ul>

- ④ **디지털 성폭력범죄 일반 현황**
  - ▶ 피해유형은 촬영(82.0%), 촬영+유포(9.4%), 유포/재유포(6.3%)의 순으로 나타났음<sup>1)</sup>
  - ▶ 피의자 성별분포는 남성(94.0%), 여성(2.6%)이고, 피해자<sup>2)</sup>는 여성(80.3%), 남성(3.3%), 여성+남성(1.8%)의 순이었음.
  - ▶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의 경우 모르는 사람(62.6%), 연인(7.1%), 직장동료/친구(3.9%), 전연인/전배우자(3.5%) 순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피의자는 20-29세(31.4%), 30-39세(23.5%), 19세 이하(18.7%)이고, 피해자는 20-29세(25.0%), 19세 이하(12.0%), 30-39세(6.9%)의 순이었음.

1) 이 통계에는 확인불가능(2.3%)이 포함되어 있음.

2) 피해자는 피의자 1인당 피해자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실제 여성 피해자비율은 더욱 높을 것임.

- ▶ 범행동기는 기타, 미상(83.5%) 비율이 높아 제한된 정보 중 우발적(호기심)(7.1%), 성적 만족(7.0%), 보복(1.1%), 이익(1.0%), 질병 (0.3%), 자기과시(0.1%)의 순이었음. 남성 피의자는 성적 만족(7.4%), 우발적(호기심)(7.4%)이, 여성 피의자는 보복(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전반적으로 모르는 사람(62.6%), 불특정대상(66.7%), 신체 일부(45.1%), 공개장소(47.8%), 식별 불가능(48.5%) 대상의 촬영(8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범행동기는 우발적(호기심), 성적 만족이 비교적 높으나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피해유형은 촬영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으로 촬영+유포가 1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는데, 이전까지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웠던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임.

## ④ 검찰처분 현황

- ▶ 피의자 4,948명에 대한 검찰처분은 불기소 2,561명(51.8%), 기소 1,952명(39.5%), 소년보호송치 435명(8.8%) 순이고, 불기소처분(2,561명, 51.8%)은 기소유예 1,211명(24.5%), 혐의없음<sup>3)</sup> 1,134명(22.9%), 각하 153명(3.1%), 공소권 없음 47명(1.0%), 죄가 안됨 9명(0.2%), 기타 4명(0.1%), 확인불가능 3명(0.1%) 순이었음. 기소처분(1,952명, 39.5%)은 구속 103명(2.1%), 불구속 1,161명(23.5%), 구약식 688명(13.9%) 순으로 나타났음.

<표 2> 검찰처분 현황

(단위: 명(%))

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송치
	구공판		구약식		
	구속	불구속			
4,948 (100.0)	1,952 (39.5)			2,561 (51.8)	435 (8.8)
	103 (2.1)	1,161 (23.5)	688 (13.9)		

- ▶ 범행장소, 범행도구, 범행대상의 경중에 따른 기소율에 큰 차이가 없으며, 피해부위가 나체, 성관계 영상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기소보다 불기소가 높게 나타났음. 촬영물이 영구적인 삭제 불가능한 불법포르노 사이트(20.5%), 웹하드/토렌트(13.3%)에 유포된 경우에도 기소율은 높지 않았음.
- ▶ 구속율은 유포(8.9%), 성관계 영상(6.3%), 웹하드/토렌트(25.0%), 인터넷 커뮤니티(3.7%)로 성적 수치심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 재생이 가능한 공간에 유포한 경우에도 높지 않게 나타났음.

## ④ 촬영, 유포횟수가 높은 경우의 불기소처분 현황

- ▶ 촬영횟수, 유포횟수를 중심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촬영횟수 11-49회(54.5%), 2회-10회(53.6%), 50-99회(46.7%), 유포횟수는 2회-10회(50.0%)인 경우 기소유예가 50%를 넘거나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촬영횟수 100회 이상(66.7%), 50-99회(53.3%), 11회-49회(40.9%), 유포횟수 50-99회(100.0%), 100회 이상(66.7%), 11회-49회(55.0%)인 경우 혐의없음이 50%를 넘거나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3) 혐의없음에는 증거불충분을 포함함

④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처분을 종합하면, 피해부위가 나체, 성관계 영상의 경우에도 불기소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등 피해부위, 범행장소, 범행도구, 범행대상의 경중에 따른 기소, 불기소에 큰 차이가 없으며,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한 매체에 유포한 경우에도 기소율은 높지 않았음. 구속율도 성적 수치심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 재생이 가능한 공간에 유포한 경우에도 높지 않게 나타났음. 또한 촬영, 유포횟수가 높은 경우에도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었음.

④ 1심 판결 결과(전국 법원)

- ▶ 1심 판결을 받은 피의자 1,913명 중 벌금 1,042명(54.5%), 징역 843명(44.0%), 무죄 19명(1.0%), 소년부송치결정(기소 후 결정) 9명(0.5%)의 순으로 나타났음.
- ▶ 구체적으로 보면, 징역+집행유예+부수처분이 593명(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부수처분 492명(25.7%), 구약식벌금 391명(20.4%)의 순으로 조사됨.

<표 3> 1심 판결(구약식벌금 포함)

(단위 : 명, %)

1심 판결		N	%
무죄		19	1.0
벌금	소계	1,042	54.5
	구약식벌금	391	20.4
	구약식벌금+부수처분	1	0.1
	벌금	130	6.8
	벌금+부수처분	492	25.7
	벌금+선고유예	25	1.3
	벌금+집행유예	2	0.1
	벌금+선고유예+부수처분	1	0.1
징역	소계	843	44.0
	징역	20	1.0
	징역+부수처분	149	7.8
	징역+집행유예	81	4.2
	징역+집행유예+부수처분	593	31.0
소년부송치결정(기소 후 결정)		9	0.5
전체		1,913	100.0

주: 1) 기소처분 피의자 1,952명 중 1심 판결을 받은 1,913명에 대한 판결 결과 분석

2) 구약식 기소에 의한 약식명령(벌금)의 경우도 포함.

- ▶ 징역형 형량을 분석한 결과 6-12월 미만이 76명(45.0%), 1-6월 미만이 46명(27.2%), 1년 1월-1년 6월 미만이 15명(8.9%)의 순으로 나타났음. 1심 재판결과 징역 6-12월 미만이 가장 많이 선고된 것을 알 수 있음.

## 1심 선고형 연도별 분석(서울 소재법원)

- ▶ 1심 선고형 연도별 분석은 모두 서울 5개 지방법원(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2011년~2016년 4월, 2017년, 2018년의 3개 구간을 비교함.
- ▶ 2011년~2016년 4월 구간은 전체 1,541명 중 벌금이 1,109명(7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집행유예가 226명(14.7%), 벌금+선고유예 115명(7.5%) 순으로 나타남. 2017년 구간은 전체 370명 중 벌금 200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집행유예 103명(27.8%), 징역 41명(11.1%)의 순이었음. 2018년은 전체 506명 중 벌금 222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집행유예 220명(43.5%), 징역 52명(10.3%)의 순이었음\*.
- \* ‘징역’은 징역, 징역+부수처분을, ‘징역+집행유예’는 징역+집행유예, 징역+집행유예+부수처분을, ‘벌금’은 벌금, 벌금+부수처분을, ‘벌금+선고유예’는 벌금+선고유예, 벌금+선고유예+부수처분을 의미함.
- ▶ 3개 구간을 비교해 보면, 벌금비율은 72.0%→54.1%→43.9%로 줄고 있고, 징역+집행유예 비율은 14.7%→27.8%→43.5%로 늘고 있음. 전체적으로 벌금, 벌금+선고유예 비율이 줄고 징역+집행유예 비율이 늘어난 것에서 처벌강화의 경향성을 엿 볼 수 있음. 다만 징역비율이 5.3%→11.1%로 증가하다가 2018년 10.3%로 감소한 것은 처벌강화가 징역형으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음.

<표 4> 1심 선고형의 연도별 비교(서울)

1심 형벌종류	2011년~ 2016년 4월 <sup>1)</sup>		2017년 <sup>2)</sup>		2018년	
징역	82	(5.3)	41	(11.1)	52	(단위:명,%) (10.3)
징역+집행유예	226	(14.7)	103	(27.8)	220	(43.5)
벌금 <sup>3)</sup>	1,109	(72.0)	200	(54.1)	222	(43.9)
벌금+선고유예	115	(7.5)	22	(6.0)	3	(0.6)
무죄	9	(0.6)	4	(1.1)	9	(1.8)
전체	1,541	(100.0)	370	(100.0)	506	(100.0)

주: 1) 2011년~2016년 4월 통계는 한국여성변호사회(2016)에서 인용

2) 윤덕경 외(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p.61에서 인용

3) 벌금에는 구약식에 의한 약식명령(법원 사건번호에 ‘고약’이 붙음)은 제외되고, 약식명령 중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법원 사건번호에 ‘고정’이 붙음), 1심 판결에 의한 것(법원 사건번호에 ‘고단’이 붙음)은 포함

## 3. 정책제언

### 검찰처분 중 낮은 기소율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 불기소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을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피해부위가 성관계 영상이고, 유포매체가 피해가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는 웹하드, 불법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한 경우이고, 촬영, 유포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임에도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경우가 있음

-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소, 불기소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 또한 중한 범죄유형에 대한 구속수사 기준과 촬영+유포의 2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④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 저연령화에 대한 대책 수립

- ▶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많은 경우 피해자의 범행 연령이 낮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피해자 식별 불가능한 상태의 범행을 하는 특징이 있음. 또한 아직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되어 범행을 하게 됨.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
- ▶ 또한 촬영, 유포 범죄는 피해자의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는 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 유포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의 계속·반복성을 끊어줄 필요가 있음.

### ④ 법원 선고 강화

- ▶ 법원선고시 벌금형을 감소하고 징역형 선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벌금형의 액수가 증가하고 징역형 개월수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처벌강화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유포매체 중 불법 포르노 사이트, 웹하드/토렌트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 재생산이 가능하여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매체에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 법원 선고시 가중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④ 젠더폭력적 속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 ▶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젠더폭력적 속성이 있으며, 피해자 성별에 관계없이 불법촬영, 유포사건에 대한 수사, 단속 등 경찰의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요청됨.
- ▶ 또한 즉각적인 유포차단을 위한 삭제지원과 유포, 유포협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가 윈스톱으로 구축되어야 함.
- ▶ 무엇보다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일반인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5~2018.
-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8.11.9.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 개최”
- 백광균(2019),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자료집, pp.3-66.
-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유경희(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자료집, 2016.9.26.

주관부처: 대검찰청 형사2과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